

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15조제1항 관련)

위 반 행 위	해 당 법 조 문	처 분 기 준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	법 제29조제1항제1호	등록취소
2.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	법 제29조제1항제2호	영업정지 2월(5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)
3.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(법인의 임원 중 법 제2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는 제외)	법 제29조제1항제3호	등록취소
4.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	법 제29조제1항제4호	영업정지 2월(5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)
5. 성능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행한 때	법 제29조제1항제5호	등록취소
6.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	법 제29조제1항제6호	등록취소